

|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5264       |
| 의 퇴 인 | 전재수 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| 2024. 11. 20. |
| 추계번호  | 24F5183       |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

**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**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04조의34 신설<br>(출산장려금을 지급한<br>기업에 대한 세액공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제율: 50%</li> </ul> </li> </ul> |
| 2  | 안 제144조<br>(세액공제액의 이월<br>공제)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정안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미공제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04조의34<br>(출산장려금을 지급한<br>기업에 대한 세액공제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2  | 안 제144조<br>(세액공제액의 이월<br>공제)             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함에 따라 법인세수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4조의34 신설)
- 공제율: 50%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나,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현행 기업의 과세자료 및 기업 재무제표 등에서 출산장려금 항목을 구분하여 집계할 수 없음
  - － 출산장려금은 회계상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(경조사비) 등에 포함되어 개인 및 법인 소득 산출시 비용으로 처리되는데, 이 과정에서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집계되지 않음<sup>1)</sup>
- 한편, 현행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\*은 일정حد도까지 비과세소득으로 집계됨에 따라 관련 정보가 존재하나, 이를 바탕으로 출산장려금 규모를 추산하는데 한계가 존재

※ 출산보육수당: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

- － 최근 5년간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 적용인원 및 금액은 2018년 48.8만명, 3,414억원, 2022년 47.2만명, 3,207억원 등으로 집계

[표 1]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: 2018~2022년

(단위: 만명, 억원)

|    | 2018  | 2019  | 2020  | 2021  | 2022 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인원 | 48.8  | 48.1  | 47.0  | 46.1  | 47.2  |
| 금액 | 3,414 | 3,357 | 3,280 | 3,204 | 3,207 |

주: 2023년 이전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소득 집계  
자료: 국세청, 국세통계연보, 각 년도

- － 현행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은 1인당 월 20만원 범위<sup>2)</sup>내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집계되나, 이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은 집계되지 않음
- ※ 출산보육수당: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
- － 또한,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구분하여 집계하지 않아 출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음

1) 2024년 1월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손비처리하도록 법령을 명확화함(기획재정부공고 제2024-11호 및 12호, 2024.1.25.)

2) 2023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출산·보육수당에 대한 1인당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

### 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세제분석2과  | 박정환 | 백경엽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 박정환 | 02-6788-4835 | jhpark83@assembly.go.kr |